

대구약령시RIS사업단-경상북도약용작물생산자회

업무협력 협약서

대구약령시RIS사업단과 경상북도약용작물생산자회(이하 ‘2개 기관’이라 한다.)는 상호간의 업무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 한방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하여 적극적 지원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 본 협약서는 2개 기관이 지역 한방산업 유통구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협력분야) 2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, 상호존중과 신의·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에 의한 상호 협력에 노력한다.

- (1) 한방산업의 육성·발전을 위해 상호 필요한 인력 및 산업화 교류
- (2)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구약령시 국산 한방 신제품 개발에 관한 공동지원
- (3) 약용작물산업 및 대구약령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·교육·마케팅·판로개척 등에 대한 협력
- (4) 대구약령시 유통구조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
- (5) 기타 국내산 약용작물을 활용한 한방산업 육성 관련 상호 협력 사항

제 3 조 (비밀유지) 2개 기관은 상호 업무수행·협력을 진행함에 있어 지득한 상대방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와 유출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,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 4 조 (대외홍보) '2개 기관'은 공동 협력내용 및 사업 추진결과를 외부에 홍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'2개 기관'의 공동명의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조 (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조문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6 조 (효력)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그 협약 기간은 어느 일방이 협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2개 기관은 본 양해각서의 협력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,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기명·날인한 후 2개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2년 04월 13일



경북대 대구약령시RIS사업단
단장 송경식

송경식



경상북도약용작물생산자회
회장 최용철

최용철